

【 4 】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3. 2.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청소년수련관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청소년수련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라.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의 납부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

바.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련관은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105-3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은 본관, 숙박시설,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기타 청소년의 수련활동 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일반"이라 함은 25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4. "소아"라 함은 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체력단련과 덕성함양을 위한 수련계획의 수립 시행
2. 수련관내의 시설 보호·관리·감독
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대외 홍보
4.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안내
5. 청소년 교육 및 상담
6. 기타 수련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련관에 두는 공무원) ①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원의 직렬과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수련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수련관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군수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증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예상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 · 수련활동 · 인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판단하였을 경우

제11조(사용허가) ①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자의 인솔 없이 입소하는 청소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료) ①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

상 · 인하 요인 발생시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용, 공익상 필요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련관을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
2.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
4.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양주군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단체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양주군 주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6조(보증금)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보증금은 시설 및 설비 훼손에 의한 원상 복구비로 충당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
3. 시설등 사용일 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단, 위약금10%를 공제후 반환)
4. 시설등의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단,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 해당 금액을 반환)

제18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강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채용자격 및 구비서류, 채용계약서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강사의 보수)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양주군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청 소 년		일 반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수련 비용	18,600	16,900	31,200	28,100
생활관 이용료 (1인1박)	5,400	4,800	10,800	9,600
급 식 비 (1인1일3식)	10,500 (1식당3,500)	9,600 (1식당3,200)	15,000 (1식당5,000)	13,500 (1식당4,500)
수련활동지도비	1,500	1,400	3,000	2,800
시설사용료	1,200	1,100	2,400	2,200

※ 단 중학생 이하 청소년 및 소아는 상기 사용료의 5%를 감액
하여 적용

2. 青少年指導者의 研修 및 交流
3. 外國 青少年團體와의 交流 및 지원
4. 南・北青少年의 同質性 회복 및 海外僑胞青少年의 지원
5. 青少年育成을 위한 弘報 및 實踐運動
6. 修鍊活動 및 奉仕活動에 대한 情報의 지원
7. 地方青少年團體協議會에 대한 협조 및 지원
8. 기타 青少年團體의 육성등에 필요한 사업

②協議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議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協議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國家는 豈算의 범위안에서 協議會의 運營經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新設 95·12·29>

第25條의2 (地方青少年團體協議會) ①特定地域을 활동범위로 하는 青少年團體는 青少年育成등을 위하여 그 地域을 관할하는 特別市・廣城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城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地方青少年團體協議會를 구성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豈算의 범위안에서 해당 地方青少年團體協議會의 運營經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4章 青少年修鍊施設

第26條 (修鍊施設의 設置・운영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修鍊施設의 設置・運營經費의 일부를 豈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修鍊施設의 所在

第16編 教育・學術 第7章 體育・青少年育成 青少年基本法

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및 登錄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⑤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設置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市・道知事は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및 登錄의 現況을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第26條의2 (修鍊施設 許可의 요건)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施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修鍊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資金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修鍊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不動產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權限이 있을 것
4. 기타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市・道知事は 第26條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하거나 登錄證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修鍊施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요건중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補完할 것을 조건으로 許可하거나 登錄證을 교부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26條의3 (修鍊施設 運營責任者)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를 그 修鍊施設의 運營責任者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任員중에서 資格을 갖춘 者를 運營責任者로 選任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修鍊施設을 設置・운영하는 개인 또는 法人・團體의 代表者(이하 “修鍊施設의 代表者”라 한다)가 運營責任者的 資格을 갖춘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營責任者를 選任하지 아니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26條의4 (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修鍊施設의 代表者(法人的

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제2종 및 제3종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4.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삭제 <96·6·29>

제28조 (국·공립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할 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6·29>

1. 국가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도 및 시·군·구는 각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중에서 각각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련시설(이하 “대표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가. 개발원등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상설운영·보급 및 운영지도
나. 개발원과 수련시설간을 연결하는 협력·지원체계의 구축 및 수련활동관련 정보의 교환

다. 관할지역안에서 행하여지는 수련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개발원에의 통보

라.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연수(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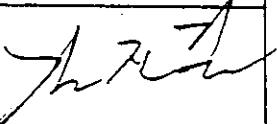
제29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①및 ②삭제 <96·6·29>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설치하고자 하는 수련시설이 2이상의 시·군·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에서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29>

제30조 (수련시설의 배치기준) ①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판 의 장
람	

군 보

제 124 호

1999년 2월 13일 (토)

차 례

조례

- | | | | |
|----------|---------|-------------------------------------|----|
| ○ 양주군 조례 | 제 1695호 | 양주군지방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 | 3 |
| ○ 양주군 조례 | 제 1696호 |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 | 4 |
| ○ 양주군 조례 | 제 1697호 |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증개정조례) .. | 4 |
| ○ 양주군 조례 | 제 1698호 |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 | 5 |
| ○ 양주군 조례 | 제 1699호 |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 | 5 |
| ○ 양주군 조례 | 제 1700호 | 양주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 | 7 |
| ○ 양주군 조례 | 제 1701호 |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 7 |
| ○ 양주군 조례 | 제 1702호 |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21 |

자치법규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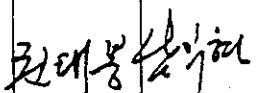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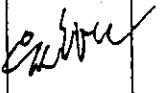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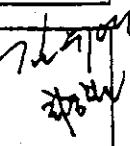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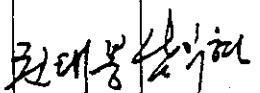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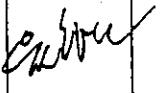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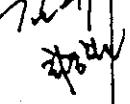
- | | | | |
|----------------|------------|-------------------------------|----|
| ○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 제 1999-26호 |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 | 21 |
|----------------|------------|-------------------------------|----|

고시

- | | | | |
|----------|------------|------------------------------|----|
| ○ 양주군 고시 | 제 1999- 7호 | 고용취약지구개발계획결정(변경)조서고시 | 27 |
| ○ 양주군 고시 | 제 1999-12호 |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변경)허가 고시 | 38 |
| ○ 양주군 고시 | 제 1999-13호 | 백석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 38 |

공고

- | | | | |
|----------|------------|------------------|----|
| ○ 양주군 공고 | 제 1999-38호 | 도시계획구역결정공고 | 54 |
|----------|------------|------------------|----|

회							
람							

반해 : 양주군

교지 · 브리고드시

118 쪽 / 119 쪽

양 주 군 보

제 124 호

양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9년 2월 일
양 주 군 수

양주군 조례 제1702호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양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양주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접용료,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독립채산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1999-26호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월 23일
양 주 군 수

- 조례명 :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제정취지

○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양 주 군 보

제 124 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조례안 전문 "별 침"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것)을 양주군수(참조:문화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2144)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제정이유

-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립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청소년수련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나. 청소년수련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다.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 전 제공,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라.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마.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의 납부기준을 규정함(안 제13조)
- 바.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0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수련관은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105-3번지에 둔다.

양 주 군 보

제 124 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은 본관, 숙박시설, 체육활동장, 야외공연장, 기타 청소년의 수련활동 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일반"이라 함은 25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4. "소아"라 함은 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체력단련과 덕성함양을 위한 수련계획의 수립 시행
2. 수련관내의 시설 보호·관리·감독
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대외 홍보
4.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안내
5. 청소년 교육 및 상담
6. 기타수련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련관에 두는 공무원) ①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원의 직렬과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수련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권 제공,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수련관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군수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증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년간 예상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수련활동·인성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양 주 군 보

제 124 호

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판단하였을 경우

제11조(사용허가) ①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자의 인솔없이 입소하는 청소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료) ①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요인 발생시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용, 공익상 필요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감면) ①군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련관을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양 주 군 보

제 124 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경제적·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이용
 4.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양주군 지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단체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별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양주군 주민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6조(보증금)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보증금은 시설 및 설비 체손에 의한 원상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경우
3. 시설등 사용일 5일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단, 위약금 10%를 공제후 반환)
4. 시설등의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일 신고한 경우(단,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 해당 금액을 반환)

제18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강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거리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채용자격 및 구비서류, 채용계약서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강사의 보수)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양 주 군 보

제 124 호

제24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양주군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分	청 소 년		일 반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수련 비용	18,600	16,900	31,200	28,100
생활관 이용료 (1인 1박)	5,400	4,800	10,800	9,600
급식비 (1인 1일 3식)	10,500 (1식당 3,500)	9,600 (1식당 3,200)	15,000 (1식당 5,000)	13,500 (1식당 4,500)
수련활동지도비	1,500	1,400	3,000	2,800
시설사용료	1,200	1,100	2,400	2,200

* 단 중학생 이하 청소년 및 소아는 상기 사용료의 5%를 감액하여 적용